

예산증액:양경숙 (정기회13회-예결특위4차)

내년도 700억원에도 못미치는 사회복지비 예산증가액은 정부보조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상 자연증가부분에 머무른다. 국가는 국방비가 많아서 사회복지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변명하지만 서울시는 무엇으로 변명을 할 것인가. 사회복지비 예산의 대부분도 사회복지시설의 건립과 부대비용, 운영비에 지출된다. 걸치레 행정과 한치도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산편성이다. 서울시의 사회복지비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어야 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 수요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97년도부터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복지관련조례 정비 및 제정:이달원 (정기회13회-예결특위5차)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정기회때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관련 근거규정 즉 조례나 운영규칙, 운영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통폐합 신설을 통해 정비해야 한다. 각 복지시설별로 단일화해서 개별명칭을 조례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복지시설 유형별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한다.

복지관 확충의 불균형:이성호 (정기회13회-예결특위5차)

서울시의 각구 종합사회복지관 확충계획을 보면 강서구는 10개소, 노원구는 9개인 반면 종로, 용산, 도봉구는 한 개소도 없다. 설치와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26조1항,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100% 서울시 부담을 하도록 하였는 바 어떤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확충계획을 세웠으며, 복지관이 없는 자치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자치구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사회복지관TO를 확정해서 TO내의 복지관에는 건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TO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자치구간의 균형배치를 유도할 예정이다.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양경숙 (정기회13회-예결특위5차)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선명성, 공정성, 효율성 확보 및 선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선정절차에 대해 특별히 규정된 사항은 없고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공인회계사를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교육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는 총20회 회의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4회에 걸쳐 여성관련 사안을 다루었는데 여성관련 안건은 다음과 같다.

- 95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업무 보고의 건
- 95년 8월 18일 " "
- 95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여학생 생활교육원 설치 조례안
- 95년 10월 23일 19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급식 시설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5일 부터 12월 26일 까지 11회 활동하였다. 이 소위원회(위원장:유대운)에는 16명의 의원중 10명이 참석하였는데 소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학교 급식시설
 - 1) 문제점
 - ① 교육청 재정의 취약으로 학교급식시설 관련 예산의 일부(소요비용의 40-60%)를 학부모로부터 각출하게 됨으로써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움
 - ② 학부모에 대한 후원금 각출에 있어서 강제성 개입 및 개인별 후원금 편차에 따른 학부모(학생)간 위화감 조성 가능성
 - ③ 학교급식시설비 일부를 학부모에 부담케 함으로써 학부모 부담 가중
 - ④ 조리기계·기구 납품업체가 도산될 경우 대책 없음
 - ⑤ 조리기계·기구 납품업체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미흡과 연대보증 미설정 등의 사유로 납품업체 도산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없음
 - ⑥ 상업용조리기구 협동조합이 있음에도 동조합의 재정능력 등 역할 부족으로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금품제공 가능성과 이로 인하여 불량제품의 납품 등 부조리 개입 가능성

2) 건의사항

- ① 교육청에서 일괄조달구매를 하되,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매업무 간소화 추진
 - 조리기계·기구설치시 사양서에 의거 지역청 감독하에 실시토록 함
- ② 조리기계 및 기구 등 제품선정시 학교급식위원회와 공동실시
 - 조리기구 생산업체의 합동설명회 개최 및 학교관계자 참석
- ③ 해당조합에 검수협조 및 납품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업체(2개사)설정
 - 해당조합내에 부품검사부 신설
- ④ 납품업체의 부도 등으로 피해 발생시 해당조합의 공제제도를 이용 피해학 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보상 확보

2. 학교부식 납품

1) 현황

- ①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에 의거 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급식품 납품
- ② 전문취급 부식품목별로 복수화하여 분리구매

2) 문제점

- 특정업체의 독점
- ① 급식학교의 부식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고 있으며, 수의 계약에 의거 납품업체를 선정하게 됨으로써 대부분 학교들이 특정 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고, 이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개입 가능성
- ② 특정업체가 저렴한 공급가격으로 부식품을 독점 납품하게 됨으로써 저질의 부식이 납품될 가능성-급식아동의 보건위생에 악영향
- 납품업체의 영세성
- ① 대부분의 부식품을 당일 구매하여 당일 소비하여야 함에도 납품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위생적인 수송수단이 미흡한 관계로 부식품의 신선도 유지 등이 곤란 - 식중독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 ② 부식품의 종류가 다양(약 186개 품목)하고, 대부분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농수산물)으로 품질 및 가격의 안정성이 불확실하여 물가조사 및 검수에 애로가 많음

3) 건의사항

- ① 급식품 구매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두가지 안중 학교별로 선택 구매
 - 1안) 공개경쟁입찰계약에 의한 구매: 경쟁체제 도입
 - 2안) 품목별 단가계약 및 입찰계약 구매: 공산품 및 농수산물 분리하여 계약
- ② 급식품 구매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별 식단 및 급식품 구매단가의 공개체제 구축
- ③ 엄정한 검수체제 구축 및 시장조사 철저
- ④ 특수한 식품을 제외한 부식품 구매는 관내교육청 단위별로 구매토록 유도 특정업체의 독점현상방지 및 독점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식품 납품 가능성 차단

3. 가스정압시설

1) 문제점

- 학교부지내 설치에 따른 폭발 위험성
 - 가스정압시설이 다중집합시설인 학교부지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가스 폭발 등 사고시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
- 이전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 학교부지내의 가스정압시설을 이전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상 주변이 단독밀집 지역으로 이전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움
 - 이전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부지 확보 곤란
- 가스정압시설 강제철거시의 애로점
 - 동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행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집행시 해당업체로 부터 행정대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가능성

2) 건의사항

- ①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정압시설을 96년 12월말까지 이전토록 함 (계획 수립 및 추진)
 - 단 부득이한 경우 극히 일부 학교에 한해 교육청과 협의 연기토록 함
- ② 96년 12월 15일 까지 이전을 전제로 사용기간 연장계약을 정식으로 하되 부지사용료를 현실화하며, 96년 말까지 철거이행 불응시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공중토록 함
- ③ 철거시까지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 추진

④ 대학교수,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 구성-안전점검 용역 의뢰

- 용역의뢰(구성원 선정) : 교육청
- 경비지원 : 해당회사 부담

전체적으로 볼 때 85.7%의 출석율과 107회의 발언횟수중 긍정적인 발언이 56%이다. 대안제시는 3회뿐이어서 앞으로 좀더 많은 내용의 질의를 기대해본다.

문화교육위원회 역시 3명의 의원이 전체 발언의 49.5%에 해당하는 53회 질의를 하였고, 2명의 의원은 한번도 질의를 하지 않아 발언이 소수의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문화교육위원회에는 여성의원이 4명인데 안순덕위원장은 사회를 보기 때문에 발언을 거의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김을동의원은 96년 총선에 나가기 위해 사퇴를 하였다. 나머지 여성의원은 출석율, 발언횟수, 긍정적 발언횟수에서 모두 3위안에 포함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7회에 달하는 발언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5-7. 문교위 여성관련 발언의 주제별 분류]

학교내 성차별	6회	지적-6		
자녀지도	12회	지적-6	대안제시-1	기타-5
급식문제	67회	지적-29 비판-5	대안제시-2	기타-31
학교환경	16회	지적-8 비판-2		기타-6
학부모단체	5회	지적-1		기타-4
사회교육	1회			기타-1
합계	107회	지적-50 비판-7	대안제시-3=60회	기타-47

급식문제가 67회로 62.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교환경문제가 16회(15%), 자녀지도가 12회(11.2%)를 차지하였다. 학교내 성차별문제와 학부모단체문제는 각각 5.6%, 4.7%로 낮은 관심도를 보였다. 발언의 질을 분석하면 지적이 50회, 비판이 7회, 대안제시가 3회로 긍정적인 발언이 56%이다. 대안제시는 3회에 머물러 의원들의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함을 알 수 있겠다.

의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급식문제는 긍정적 발언이 36회(53.7%)로 무난하게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내용을 분류하면 운영에 관한 질의가 35회(52%), 급식의 질이 17회(25%), 부정 문제가 15회(22%)로 운영에 관한 질의에 집중되었다. 운영에 관한 질의에서는 저소득층 우선 지원을 촉구하였고 급식위원회 권한을 강화할 것을 지적하였다. 급식의 질 질의에서는 쌀의 질문제와 영양문제를 지적하였고 신체에 유해한 조미료와 인스턴트 식품 자제 등을 촉구하였다. 부정에 관한 질의에서는 부정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돋보인 활동은 96년 예산에 급식실시를 위해 270억원을 강력하게 확보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학교환경에 대한 긍정적 질의는 10회(62.5%)로 무난한 편이며, 2부제 해소를 위한 대책과 운동장의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집중 논의 되었다.

다음으로 자녀지도에 대해 12회 질의를 하였는데 긍정적 발언은 7회(58%)이다. 중고폭력서클, 약 오·남용문제, 흡연문제 등 비행학생문제와 방과후 아동대책에 관한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각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보다는 1회성에 머물러 심도 있는 질의가 요구되고 있다.

학교내 성차별문제는 6회 질의했는데 교육내용, 집행과정의 성차별, 성희롱교사의 조치에 대한 추궁이 있었다. 학교교육에서 여성들에 대한 수많은 성차별이 존재함에도 시의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거나 시정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학부모단체가 5회, 사회교육에 관한 질의를 1회 했는데 단순질의에 머물렀다.

본회의 질의 내용을 보면 급식 5회, 학교내 성차별 3회로 나타나 학교급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남녀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학교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내용은 거의 없었다. 구정고 이과여학생의 내신분리 적용이라든가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남학생 성교육을 지적한 의원이 없었다. 중·고 남녀공학에서 학급별로 남녀를 나누고, 고등학교에서 대개 실시되는 남녀분리교육에 대해 지적한 의원이 없었던 것은 의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대개 이 문제에 대해 학교측은 부모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구실을 붙이지만 어떤 것이 양성평등 지향

적인 교육이고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고 본다.

문 교위에서 주요하게 지적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급식의 질 문제점:임정지 (81회 본회의3호)

- 급식품 신선도 3, 4년 묵은 쌀
- 위생상태 215개교 대상 대장균 20교, 세균 48교
- 95년 8월 40개교중 80% 영양기준 미달: 5월급식일지 조사결과 총열량 700Kcal 가 모자라는 급식을 급식일중 절반인 10일 이상 제공. 영양기준에 미달하는 날은 월 평균일로 환산하면 12.6일. 이 기준에 칼슘, 철분 등 한가지 이상 특정 영양소가 기준에 미달하는 날은 8.5일. 영양소 산출에서 비타민 D, 철 제외. 3개교-비타민 A, B1, B2, C, D부족. 18개교-두가지 이상 영양소 산출 안함. 시, 도교육청은 6개월에 1회 감독. 위생점검에 그쳐 영양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95 12월 현재 급식학교에는 영양사1명, 기능직공무원1명, 조리종사원3-5명을 배치하고 있으나 특히 조리종사원의 임금수준이 낮아 96년도부터는 약2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감독은 위생면에 치중.

급식시설 부조리:유대운 (79회 문교위 2호)

- 주방시설 6,800만-8,000만원인데 이 액수의 10-15%요구, 부조리 척결 대책
- ⇒ 학교에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거 한국상업용 조리기계공업 협동조합과 계약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의 과열경쟁으로 금품수수행위 발생 (교장10명, 서무책임자11명)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식후원회 후원금 부담없이 급식학교 신설 추진 ■ 조리기계, 기구는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 부득이 조달구매 불가능 시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개 경쟁입찰 구매 ■ 중간소매업자 배제 및 조달청 가격사정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양한 제품 선택: 학교장 임의결정 배제
----------------	---

- 주방시설교실 1억-1억2천만원인데 교육구청에서 감독소홀과 설계도면 지원 없어 부실공사

⇒ 지역교육청의 업무폭주와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공사의 직접 집행 또는 설계지원이 어려웠기때문에 예산을 학교장에게 배부하고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통해 95년 도 집행. 95년도에는 남부, 강남, 동작교육청은 학교급식 실 공사를 직접 집행하고 강동교육청은 건축공사만 집행. 동부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설계를 하고 감독 및 준공검사 요청시 기술지원을 하고, 기타 교육청은 설계요청 또는 설계검토 요청시 기술 지원을 하는 등 업무형편에 따라 지원. 대부분의 급식 학교는 기존교사의 유희시설을 개조하고 있어 부실공사 위험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부식납품업체의 예상되는 부조리 대책. 학생수 1,500-2,000명. 1,500명 기준해도 한달에 약 2천만원 진출입되기때문

⇒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임의선정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입

- * 문제점 - 대부분의 급식품이 1차 생산품으로 가격변동과 품질의 차이 많음
 - 납품업체 임의선정에 따른 업체간 과열경쟁 및 금품수수
 - 고정업체의 계속납품으로 유착가능성과 독점납품으로 단가상승
- * 장 점 - 성실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양질의 급식품 구입으로 질 향상
 - 급식인원, 식단의 변화 등에 능동적인 대처 용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서울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서울시의회는 구로부녀복지관, 보육사업,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복지정책·운영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보호여성문제와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의의 수준을 높이고,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급이 보장되지 않고 보좌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 보여진다. 한 유능한 의원은 자신의 역할에 큰 의의를 느끼지만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다음에 할 업무를 못내겠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다. 서울시의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잘못 쓰여진 곳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강도높은 활동이 요구되는데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좌관계 도입과 생활급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방대한 분량의 자료

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현장을 발로 뛰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기초조건으로 보여진다.

서울시민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여성의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여성의 시각에서도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여성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활동평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시 여성정책의 방향은
현대복지사회의 적합한 가치관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서울시 여성관련 사업을 분석하면 복지측면의 잔여주의적 경향과 보수적인 여성관이 내포되어 있다. 사회복지의 잔여주의는 불우여성을 그 중심대상으로 하고 문제 발생 원인도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서비스의 성격을 시민권으로 규정하기 보다 자선으로 보고 있다.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한 부녀복지나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에서 여성복지가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전체여성을 대상 집단으로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했다.

여성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은 요보호자와 일반시민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서울시의 복지사업은 아직도 요보호자에 치중하고 일반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정서함양 등에 관해서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녀복지 분야에서 단순한 수용보호 서비스를 위주로 제공하고 있는데 빨리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서울시 추진사업에서 아직도 보여지는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 기초한 사업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이란 여성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며 전면적인 여성역압이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의 총체라 규정할 수 있으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논리의 중첩적 피해자였던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핵심적 가치관은 여성도 적성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일할 기회를 얻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권·평등권을 가진 존재이고, 여성을 모성기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되 이를 이유로 여성을 자녀양육자이며 가사전담자로 역할규정한 전통적 성별역할분업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가
어려져야 한다.

민선시장이후 여성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점이다. 그러나 서울시 여성정책의 가치관에서 아직도 남아 있는 잔여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여성관에 따라 여성의 고용확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여성복지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보다 시정사업의 협조차원에 머물러 개인의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에 큰 도움을 못준 측면이 있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과 공공부문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다. 시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고,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율을 30%이상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관련 부서와 일관단체 계와 강화가
어려져야 한다.

가정복지국과 여성복지과는 아직도 가족복지정책의 범위안에서 여성복지차원의 여성행정이 주가 되고 있다. 여성정책을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개선과 남녀평등을 실현하여 사회의 공동발전에 함께 기여하기 위한 총괄적 의미에서 볼 때 현재의 가정복지국의 기능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여성정책의 구체적 집행권을 갖는 여성전담부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노인·생활보호대상자·장애자 가운데 여성의 특수문제가 고려되고, 아직까지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족부양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년도에 신설된 정책보좌관제는 시장의 참모기능을 수행하여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함과 동시에 중앙의 행정기구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중앙의 여성정책과 서울시 여성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다.

넷째,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의 예산액이
증대되어야 한다.

'96년 여성복지과 예산 160억 7,586만9천원중 요보호여성지원비가 85억 8,386만9천원(53.4%), 여성의 능력개발사업비가 63억 9,626만3천원(39.8%), 사회참여촉진사업비가 10억 9,573만7천원(6.8%)이다. 여성의 능력개발 사업은 주로 부녀복지관 운영비로 사용되지만 예산액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다. 사회참여 촉진사업은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제외하면 1억 원도 채 안된다.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증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시설운영비와 부대비용에 총 예산의 75.9%에 해당하는 114억 5,759만5천원이 사용되는데, 이에 걸맞는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서울시의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어려져야 한다.

서울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서울시의회는 남녀평등 촉진과 취약계층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질의의 수준을 높이고,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서울시의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잘못 쓰여진 곳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좌관제 도입과 생활급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권영자(1995),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박사학위논문
 경기도(1996), 지방자치제와 경기여성정책의 방향.
 김경애(1995), 여성문제는 지방의회의 의제가 아닌가, 인천여성의 전화
 김연명(1994), 보육비용 관리체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4춘계학술대회
 김용일(1995), '사회복지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향'
 [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노동부(1995), 사업체 노동실태 조사보고서
 문병주(1994),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홍익재
 박경숙(1993), '복지사회와 여성' [21C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박정숙(1986), '체계론적 접근에 의한 여성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연구 겨울호], 한국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1995), 시정운영3개년(1996-1998)계획.
 서울특별시, 1995년도 시정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995), 제35회 서울통계연보.
 서울특별시(1996), 부녀복지행정
 서울특별시(1996), 서울여성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시정개발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 30-37
 서울특별시 의회(1995), 제78회 임시회-제13회정기회 경과보고서.
 세계화추진위원회(199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안양여성회(1996), 지방화시대와 여성
 이창미(1995), '서울시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체제 개선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교회와 지역사회] 17호
 이해경(1995),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시정발전을 위한 여성정책포럼], 서울특별시
 정무장관(제2)실, 1995년도 여성정책추진방향.
 " 1996년도 여성정책추진계획, "
 조은(1995), 서울시 보육정책의 방향 "
 최일섭(1985),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출판부
 최현숙(1995), '지방자치와 보육사업' [우리네 아이들 30호]
 통계청(1992),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통계청(1995), 1994 경제활동인구연보
 한국여성개발원(1990a), 여성복지관계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0b),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여성,
 아동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정책담당 국가행정기구의 기능강화 방안
 한국여성민우회(1995), 지역살림은 우리 손으로
 한국여성개발원(1995), 여성통계연보

꺾어지는 구슬이 되기 위하여

김 범수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서울특별시 여성위원회 위원)

먼저 이경숙 선생님의 원고를 보고 여러가지의 여성관련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착상이 좋은 논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성복지, 여성문제에 관련된 논문과 글들, 그리고 여성들의 시민참여 운동이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서울시정과 시의회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보기 드문 접근방식으로 생각된다. 토론자가 보기에 평가라고 하는 원칙은 먼저 계획단계 부터 평가계획과 척도가 수립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영역이나 민간 부문이나 사실 미국과 같은 평가척도를 적용하는 방식은 지금까지는 거의 외면되어 왔다. 오늘 발표된 자료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평가의 틀을 만들어 이러한 척도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의회의 여성부문을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였다기 보다는 필자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이 강한 평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경숙선생님은 여성민우회의 공동대표로서 또한 그동안의 여러가지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은 물론 자료해석에 있어서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사실 지금까지 여성들을 위한 글이나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 남성들의 태도는 나의 절박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고 강건너 불을 보듯 하는 이들이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여성문제, 여성복지에 관한 글이나 활동들은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한 행동이었던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노력한 정도에 비하여 결실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후 부터는 여성부문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가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한 느낌이 든다. 이제는 여성정책을 잘 다루지 않으면 차기에 손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책결정자들은 이미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여성정책은 계획, 실행, 평가의 단계는 물론, 추진력 또한 매우 매우 미약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여성에 의하여 서울시정과 시의회에 대한 외부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는 주제가 예시하는 바와 같이,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느낌이 있어 조금은 초점을 좁혀서 논하였더라면 결론도 좀 더 명확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평가란 조직에 대한 평가나, 예산이나 재정에 대한 평가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나에 따라 평가의 척도와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예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제삼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경숙선생님은 그동안 경험으로 보아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만 평가의 척도를 예시해 주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첫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토론자는 사회복지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점과 관련하여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①

최근 199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계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대책이 조금은 향상이 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대책은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서울시 여성부문에 대한 자료가 여러가지로 제시되었으나 여성부문에 대한 수준도 아직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고수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복지수준도 결국은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에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의 수준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필자도 제시한 바와 같이 부녀복지과가 여성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두번째로 논의하고 싶은 점은 여성관련 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여성관련 조직체계중 가장 전통적인 조직체계는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의 체계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여성관련 조직체계를 여성정책의 집행에 있지 않고, 가족보호정책의 조직으로 본점은 견해를 같이한다. 1980년대 제6공화국시절에 여성들의 공무원진출을 늘리기 위해 설치된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의 설치에 여성복지정책에 발전을 가져왔는지 아니면 여성정책발전에 저해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시기가 온 것 같다. 토론자의 견해로는 여성관련 가정복지국이나 가정 및 부녀복지과는 여성들의 공무원진출과 관계국장과 과장자리를 만들어 주어 극소수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는데 일조를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을 별정직으로 채

용하여 타부처 공무원들과 같은 인사이드가 없었다. 또한 대부분 가정복지 관련업무들이 지역사회내의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 관계공무원들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의욕이 떨어지게 되어 소진(Burnout)현상에 빠진 공무원들이 많았다. 때문에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반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성복지정책 전체를 향상시키는데는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지는 않았을까?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히려 보건사회국(사회국)과 가정복지국(과)이 통합을 이루는 곳이 있다.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조직체계는 사회복지의 발전은 물론 여성복지의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여성관련 조직체계에도 남성들이 투입되어 여성복지정책을 계획 실행하고 여성들도 일반조직체계로 인사이드가 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금년도 서울시 감사과장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3]

여성복지정책이 발전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보건복지부와 정무 제2장관실의 여성복지정책이 함께 공동으로 발전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1995년 서울시 바른시정기획단회의에서 논의된 이야기다.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관계법령을 앞서나갈 수 없다는 점이였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계법령에 예시된 규정을 앞서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서울시만 복지정책이 앞서나가면 서울시에 인구유입이 예상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해 나가려면 여성복지관련 법조항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서울시 여성복지, 사회복지관련조례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관련의회활동에 대한 속기록 등 사후 평가도 착상은 좋았으나 관련 조례의 제정이 없는 의회활동은 그저 논의로만 끝나기 쉽다. 서울시 여성복지관련 조례의 제정을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라면 발표자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지요?

[4]

필자의 제언대로 여성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시설을 안내하기 위한 여성복지지도의 작성 및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들의 발굴과 훈련, 그리고 여성복지지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1996년도 가정복지국의 신규사업으로 등장한 서울가정도우미의 프로그램은 발표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앞으로 중산층의 복지서비스 영역에까지 확대할 수 있어 앞으로 매우 전망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다. 서울가정도우미란 단순히 재가노인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외에, 여성들의 취업증대효과, 사회참여, 여성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5]

마지막으로 서울시 여성부문의 발전은 앞으로 여성공무원의 숫자를 20%로 증가시킨다는 발상만으로는 여성복지정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기 쉽다. 여성공무원의 수를 20%로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정복지국이 아닌 다른 중요자리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여성인력들이 공무원사회에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분야에서 진급을 위해서는 공무원분야의 3D분야로 알려지고 있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국 등의 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이 반드시 다른분야 보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오늘 이경숙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가지 평가와 제안들이 꿰어지는 구슬들이 되기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논평 II

이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 방향을 논의해보자!

김 경애
(동덕여자대학교 여성학 교수)

지방자치가 단체장까지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선출하므로써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난 1년 동안의 서울 시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민선의 시장과 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여성부문에 관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도 처음 있는 일로써 의의가 크다. 논문 내용에서도 서울시의 여성현황에 대한 분석도 처음 시도된 것으로 서울의 여성들이 처한 상황을 잘 분석해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분석에서 서울시의 여성문제가 어느정도 들어났다고 하겠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여성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은 인천시의 경우(김 경애, 1995)와 같은 것으로 지방의 여성정책이 중앙의 정책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지적이라 하겠다. 여성정책을 주관하는 정무(제2)장관실이 중앙의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현상화에서 지방정부는 여성정책의 실제 시행자로서 중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실지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은 안타까운 것이다.

이 논문이 가지는 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민선시장과 의원들은 선거에서 여성에 관한 공약을 여러가지 발표했는데 이러한 공약에 비추려 지난 일년간의 공약 이행정도를 분석하였으면 한다. 특히 조순시장이 약속한 여성프라자 설치등의 여성정책은 여성계가 크게 환영하고 기대한바 있다. 이러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서울시 여성의 현실 분석과 여성정책 시행에 관한 분석이 보다 유기적으로 철저하게 분석되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 보겠다. 노인여성이 배우자없이 혼자 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가 서울시 여성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 또한 '노년 피부양인구가 증가하여 심각한 노인문제가 대두될 전망'인데 이와 연관된 여성의 부담과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이 논의되어야 겠다. 보육시설 상황에서는 서울이 전국에 비해 더 민간의존적으로 아동에 대한 개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분석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여성실업율, 취업단절 현상, 불안정 고용 등의 문제와 연관된 정책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용어의 문제로 예를 들면 서울시가 쓰고 있는 잘못된 용어인 윤락여성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고, 부녀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바꾼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업에서 여전히 서울시가 부녀복지(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부녀복지관, 부녀상담소라는 명칭이 기혼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미혼여성들이 이러한 기관을 보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기위해서라도 명칭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정책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동원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새로운 여성정책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새로운 시각에서 그 시행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이 확실하다. 매춘여성들의 문제는 새로운 매매춘 방지에 관한 법률 통과와 시행 이후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정책 시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요보호여성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미흡하다. 또한 요보호여성에 대한 정책에서 구타당한 아내에 대한 정책이 부재함도 지적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 지원정책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정책이 전혀 부재함을 보다 명백하게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책, 모자가정발생에 대한 분석과 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부재하고 있다. 성폭력 문제도 보다 예방의 차원에서 정책이 필요하다. 고아원 시설 등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녀회관(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한다)을 새롭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의 운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로부녀복지관의 사업의 예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 나타난 것을 비춰볼 때, 부녀회관(여성회관) 사업에서 취미생활을 위한 강좌는 전면 폐지할 것을 제의하고 직업훈련에서는 보다 철저하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고 싶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취미활동도 다양하나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여성들은 자비로 하도록 하고 그러한 예산을 여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여성에 대한 관한 사업도 여성에 관한 편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여성지도자 발굴을 위한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웅변대회를 통해서 결코 여성지도자가 발굴될 수도, 되어서도 안될 뿐 아니라, 여성을 아직도 미성년자 취급을 하는 기본적인 발상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1세기 여성 발언대는 여성의 발언대가 아니라 정부의 발언대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있음이 그 관련내용에서 들어난다.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이 여성의 노동력을 무임으로 이용할려는 발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활동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한 관심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무관심한 문제를 제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에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논 평 III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관련성과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김 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금일은 1995년 6. 27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지 1년에 즈음한 날로 오늘 이렇게 서울시정·시의회 1년 여성정책평가 토론회를 마련한 것은 여성정책에 관한 1년간의 지방자치를 평가하여 21세기의 지방화시대를 보다 확고히 다져나가고자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주제발표자께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를 택하여 여성관련사업과 서울시 의회의 활동을 주로 사업계획서나 속기록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개편화된 여성조직내 관련 담당자들의 의견을 연구에 포함하였으면 보다 논문이 입체적으로 살지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주제측에서 저에게 주로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 관련성과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토론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주제발표자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제발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미 주제발표자가 이미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83년 이후 중앙에 특히 여성정책심위원회가 설치되고 여성개발원, 정무장관(제2)실과 중앙의 38개 부처를 여성정책 협력부서로 지정되면서 여성정책이 과거에는 주로 보건복지부 부녀복지과와 노동부 부녀소년과에서 여성보호차원에서 한정된 분야를 중점으로 여성정책이 이루어 왔던 것이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리의 확대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지방의 경우도 1988년 이래 시·도에 가정복지국과 시·군·구의 확대 설치 이후 여성관련 지방행정체계는 내무부 조직으로 업무는 주로 보건복지부의 부녀복지 사업을 실시해오다 작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의 여성정책의 확산이란 측면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내에 기존의 가정복지국을 개편하여 여성복지과 내지 여성정책과를 신설내지 여성정책보좌관(서울시)내지 여성정책실(경기도), 여성정책심의관(충남)을 두어 최근 중앙에서 중점을 두고있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권리의 확

대리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발표자의 지적대로 아직까지 이들 여성관련 지방조직들은 아직 복지적인 측면에서 잔여주의적 경향과 보수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10,000불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확대,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의 보다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가 생활정치로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여성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정책의 수립을 제안하였는데 서울시의 경우 지방자치내 여성조직의 개편이 이루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시기 상조적인 면도 없지않으나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역시 과거에 해왔던 업무로서 모자복지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상호협조하에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해야하는 여성의 건강, 복지, 교육, 사회참여의 확대 등과 지역특성과 관련된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대도시로서의 특징을 지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예산, 인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성개발원같은 조직의 설립내지 여성개발원과의 연계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이제 북경여성행동계획을 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선 중앙이나 지방의 여성정책기구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중앙의 여성정책전담부서인 정무장관(제2)실의 경우 현재 집행권이 없는 상태로서 여성처로의 개조내지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 강화로서 남녀공동참여실 등의 설치 되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 등 38개 여성정책 관련 부서내 전담인력의 확보와 여성관련업무를 조정, 통합하는 기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활성화와 여성개발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지방정부의 여성정책기구에 여성담당관내지 여성정책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옴브즈만이 설치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확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정책의 발전내지 연계차원에서 여성조직의 경우 중앙과 중앙,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과의 협력방안과 평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경우 정무장관(제2)실의 기능강화와 함께 간사부서로서 38개 여성정책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각 부처와 여성관련법 및 여성정책관련사업 등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무장관(2실)을 간사부서로

하여 중앙내 여성정책관련 부처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논의 내지 진행되는 여성관련 정책을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의 여성관련부처와 지방의 여성관련부처와의 협조체제로서 지방에 여성정책기구 또는 여성정책담당관으로의 기능강화와 함께 중앙의 간사부서인 정무장관(제2)실과 지방의 여성정책기구내지 여성정책담당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여성관련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의 여성정책관련부서의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함께 정기적인 지역간 회의내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간 여성발전과 협력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화시대로서 이제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과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다. 현재 정부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사업으로 여성정보네트워크 사업을 추진중인 바 보다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보체계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 ● ● ● 록

1. 여성관련 발언 내용 요약

보건위원회

● 상임위원회

정책 및 운영(17회)

● 정책(3)

- 공(1)-시정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장 견해(지방화시대에 맞는 복지정책)
- 기타(2)-복지시책에 대한 입장/복지정책담당, 연구기관, 위원회 구성원

● 예산(8)

- 9) 공1(6)-사회복지예산확충
 - 복지서울에 맞는 대책
 - 96년도 신장계획:전시행정보다 불용액 남기지 않는 예산 집행
 - 예산지원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상명하달, 전시행정 지양)
 - 국고보조사업의 가내시액으로 발생하는 불용액문제 해결방안
 - 보조금근거 법규에 따라 확정내시액을 통고받았는가

- 10) 공2(2)-사회복지과목 단일화 통합논의, 확충방안
 - 재정경제원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 가내시액을 확인하는가

● 운영(5)

- 공1(3)-재가복지사업의 일상전문인력 확대(시설보호위주에서 일상복지의 다양화)
 - 각종 위원회 활성화안
 - 집행부서·연구부서 따로, 활동 검토
- 공2(2)-사회복지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대책
 - 각 위원회 회의실태, 존재여부검토

9) 공1 - 지적
10) 공2 - 비판

- 기타(1): 기타-가정의 날 제정 용의

구로부녀복지회관(53회)

● 운영내실화(27회)

- 공1(15)-32명 기숙사(75명 정원)활용도 미비, 개선책(2회)
 - 수자수 형광등 돌출, 교실앞 물통
 - 유아실 입소대상자 영세업자 자녀까지
 - 도서실 이용도 낮음, 예산미비(2회)
 - 소수 교사로 교육의 질 우려
 - 알뜰시장운영에 구별 예산지원관계, 취급품목 구입경로
 - " 활용제품 취급, 독점단체(새마을) 지양
 - 저소득층 심사, 비율
 - 수료생 사후관리
 - 홍보확대(2회)
 - 교육생모집, 현장실태조사 >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 예산미집행, 출장보고서 無, 자체사업평가 無

- 11) 공3(3)-빈 기숙사 시설활용 > 청소년, 노인 쉼터(2회)
 - 복지관 활용 확대안 > 홍보, 교사자질, 버스운영

- 기타(9)-바자회 운영 및 실태/년도별 모집학생수, 최종수료학생, 기숙생(2회)
 - /기숙생 1순위 사회복지수용자 비율/2명의 사고내용(감기)/사업집행 공식기 구, 임원명단, 자격증, 기숙사수용심사기준, 규정, 내규/운영팀이 여성이어서 부진 이에 대한 책임/자립도/홍보

● 취업 및 능력개발(15회)

- 공1(9)-인건비 7억에 비해 운영 부실, 활용도 부진, 비생산적(3회)
 - 활성화계획:새로운 교과 도입(주부레크레이션, 노래교실) 취업·소득 高(4회)
 - 정보처리과 기중 현대화
 - 자격취득자 적은데 방향전환
- 기타(6)훈련교사자격증여부/취업알선하면 신분보장되는지/정보처리과 취업자 숫자/사용컴퓨터, 재봉틀 가동율/과목의 구태의연/새로운 프로그램

● 재정(10회)

- 11) 공3 - 대안제시

공1(4)-보상금 포함 항목 부적합성(급식비, 의료보험부담금, 연금 등)(2회)

- 예산 이월 이유
- 확보된 예산집행에 대한 의지
- 이용도 낮은 토지매입 이유

공2(1)-항목 표현의 부적정성(바자회 징수)

기타(4)토지매입비비용/보상금내용/총업무추진비,불용액/알뜰시장,바자회 수익이용도

●기타(1회)

공4-18~25세 1년 교육생의 학력수준

기타복지관(7회)

●시설확충(3회)

공1-부녀복지관 확충계획

기타(2)-건립중인 사회복지관 내용/복지시설 지도화(다음 예산 참조)

●운영내실화(2회)

공1-복지관 건립시 전문가 참여, 신축시 상반기 조기발주

기타-운영평가제 실시여부, 규정제정여부, 평가·재위탁결정안

●재정(1회)공1-복지기관의 예산확충계획

●비리(1회)공1-자원봉사활동자들의 복지시설 확인증 발급 유혹에 대한 개선안

보육사업(37회)

●운영내실화(22회)

공1(11)-사립놀이방 허가 어려운 이유

- 보육시설운영비 불용이유, 불용액 자치구 보육센터 운영(2회)
- 예산에 따른 집행이 안된 이유(2회)
- 보육시설 교육기능, 교육청과의 협조체제
- 시설조사, 통계, 인원관리도 직접 주도
- 보육정보센터 운영계획 및 활성화 방안
- 94년, 95년 개발된 보육프로, 보급실적
- 복지사업비 불용액은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립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시립영아시설을 지원하는 이유

공2(7)-보육시설 운영개선사업안 협의한 사람

- 보육위원회 개최 횟수, 기능활성화
- 보육수요아동에 비해 확충계획의 불균형
- 보육시설 중·개축비, 개·보수비 불용액 이유
- 직장보육시설 계획 세운 세추위, 보건복지부에 예산, 특혜 요구
- 보건복지부 가내시액 차이로 발생하는 불용액의 처리방안
- 보건복지부에 국회의결과 달리 예산전용한 것을 협의한 적이 있는가

공3(1)-불용액을 전용처리 할 수 있는가

기타(3)-보육지침상 나온 시설 유아수, 종사원수, 임금/보육현황 설문조사여부, 자치구별 공급·수요 파악/운영평가제 기준

●시설확충(9회)

공1(5)-학교보육시설이 부진한 이유

- 확충실적, 지원내용
- 확충예산 확보방안
- 종교, 학교 부설 어린이집 설치지원 내용, 부진이유는 홍보가 안되어서인지
- 시설확충계획, 자치구별 차이 개선안

기타(4)-영아전담시설, 휴일·야간·장애자전담 시설 시범설치여부, 지원액/95년도 직장보육시설 실적/95 확충, 준공, 신축 구립시설. 인근 소규모시설 문단은 곳 /94, 95년도 개·보수 장비내용,집행액

●입소아동(3회)

공1-저소득층 우선 -->고급인력

기타(2)-정원미달 시설대기자 60-70명 시설/입소아동 저소득층, 전업주부 자녀 비율

●재정(3회)

기타(3)-시설 소요예산 정도와 재원조달 방법/자치구에서 민간시설 지원해 준 곳/ 인건비인상문제

요보호여성(8회)

성폭력사업(2)기타-성피해내용, 남아있는지/쉼터 운영단체

가출부녀(1)공1-임시가출부녀 보호하는 시립부녀보호소 자원봉사자 교화방법,

운영 상대과약

- 기술교육(1)공1-시립여자기술원 폐지후 서울시 직접 시행계획
- 가정폭력(1)공1-자식의 부모학대, 부모의 아동학대 대책
- 윤락여성(1)기타-교육방법
- 미혼모(1)기타-미혼모여성 대책
- 부자가정(1)기타-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책

여성능력개발(2회) 사회참여 확대(11회)

- 취업(1)기타-민간단체, 관의 취업알선사업 차이
- 재정(1)기타-마포부녀복지관만 감액된 이유
- 사회참여활성화(8)

- 공1(4)-여성발전기금 조성목적, 조성액, 조성방법
 - 여성발전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거조례가 없기때문에 10억 삭감, 이에 대한 의견
 - 여성발전기금조성은 절차상 문제 있지만 이번에 통과하고 다음에 잘못하면 깎는 방향으로
 - 여성위원회 구성에 많은 민간인 참여할 수 있도록

- 기타(4)-여성프라자 설치방법, 운영계획/여성발언대 저조한 이유/ 이번 회기내 기금조례 발의 가능한가/여성위원회 구성문제

- 교육(1)기타-주부환경교실 모집방법
- 기타(1)기타-북경 NGO포럼 민간, 공무원 내용, 교류내용, 서울시 실천내용

자녀교육관련(6회)

- 기타-청소년 유해업소 고발처리기구, 운영실태/비행청소년선도 민간인 참여 운영위원회 내용/ 보건법상 학교주변 정리에 대한 견해/학교급식시설의 시설내용/ 학부모회의 저녁시간 개최 방안/ 방과후 아동 특별활동, 어머니자원봉사자 활용계획

건강 및 기타(5회):

- 공1(3)-수입화장품 불합격 판정이 낮은 이유
 - 고아발생 억제와 국내입양대책(2회)
- 기타(2)기타-수입화장품을 국립보건원에서 취급하지 않은 이유/棄兒에 대한 대책

● 행정사무감사

노원부녀복지관(32회)

● 운영내실화(19회)

- 공1(3) -사업내역, 운영방침 등의 근거규정 (답)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 수강생 대부분이 전업주부인데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운영계획 세우는 운영위원회 있는가
- 공3(3)-상담증가에 대해 지역여성단체와 공조, 협력관계 모색
 - 특수상담(예:심리상담)확대 필요
 - 응급환자 발생 대비 주치의, 병원 연결
- 공4(13)-영양사가 없는데 향후 대책은
 - 보육실운영방법, 별도 프로그램 여부
 - 건물70억 투자, 년예산 10억에 적합한 복지증진 기여도가 있는지
 -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건의방법(2명)
 - 교육, 보육중 사고대처 방안
 - 직원활동 체크 상황
 - 강사선임기준, 모집방법
 - 교육생모집 홍보활동(영세민 23명 수강)
 - 체육실을 남자 헬스장, 여자 에어로빅장으로
 -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운영 의향
 - 장애자 프로그램 계획
 - 이용 적은 결혼예식장 활용방법

● 취업 및 능력개발(7회)

- 공1(3)-기술훈련계획 1,800명중 실제 이수 약 150명이 부족하게 된 이유
 - 저소득층 취업목표 500명중 35%인 176명만 취업한 이유
 - 프로그램 전면 검토가 필요한 때
- 공2(1)-기본방침인 저소득층 기술교육생의 취업저조
- 공3(1)-분야에 따라 교육기간을 차등운영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
- 공4(2) -수료생 면허취득이 매년 떨어지는 이유
 - 기술교육생 중도탈락 발생 원인

● 재정(4회)

- 공1(2)-세입중 시보조금 9억7천만원 기재 안됨
 - 예산불용액 중 교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이 많이 남는 이유와 향후 대책
- 공4(2)-세입·세출 차이나는 것, 계수가 맞지 않음, 불용액 이유
 - 시 보조지급 기준

기타(2회)

- 공4(2)-교육생 연령별 분포도
 - 한글교육 수강후 수준, 활용 범위

가정상담소(15회)

● 운영(10회)

- 공1(7)-가정상담을 구별로 하지 않는 이유
 - 부녀복지과 상담이 비슷한데 통·폐합 의향
 - 1인 1일 2.9건으로 적은 편인데 홍보방향
 - 타 상담기관과의 일관성있는 체제
 - 일목요연한 보고서 작성(예산, 조직체계)
 - 북부지역에 편재되어 있는데 타지역 설치 용의
 - 쉼터 설치 필요
- 공4(3)-별정직 6급으로 전문 상담이 가능한 것인지
 - 법률상담문제는 돈이 필요한데 무료로 할 수 있는가
 - 9명으로 상담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

● 재정(1회)

- 공1(1)-예산에 인건비 안 들어간 이유

● 기타(4회)

- 공1(1)-피감기관으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 공2(1)-사업실적이 많은데 직제상 표시 안나는 것은 문제
- 공4(2)-종전의 이전, 폐쇄 근거
 - 개인가정상담소와의 차이

가정복지국(46회)

● 복지:정책 및 운영(8회)

- 공1(6)-예산이 저조하게 집행된 이유
 - 복지전달체계의 이중성, 복잡성이 야기되는데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지, 직제개편안 내용
 -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가
 - 90년도 불용예산액과 대책, 년도별로 정해진 항목에서 돈이 남음
 - (답) 94억 예상-보육시설운영비 58억, 노인교통비10억, 모자·부자가정 6억2천만원 등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일원화(2회)
 - (보사환경국 사회과와 가정복지국 사업 중복문제)
- 공4(2)-각종 위원회의 사업실적
 - 세입중 사업수익이 105%인 이유

● 능력개발:구로부녀복지회관(2회)

- 공1(2)-시정조치에 대한 대책(2회)

● 능력개발:3개 부녀복지회관(13회)

- 공1(12)-사업이 저조한데 중간사업평가를 하는가
 - 직원 결원과 수강생 중도탈락으로 예산미집행이 계속
 - 발전방안(명칭:서울여성회관, 독립성·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 후속 미조치 이유
 - 부녀복지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2회)
 - 취업은 안되고 수수료만 하는 기술교육을 주 사업으로 할 것인가
 - 합격을 저조가 수강생들의 책임만인가, 공무원의 책임은.
 - 3개복지관의 개선책(4회)
 - 기술교육생 면허취득율이 저조한데 기본방침과 차이나는 것에 대한 대책
- 공3(1)-불용액을 낙후한 복지관 시설보강에 사용할 의향은

● 가정상담소(1회)

- 공3(1)-가정상담소의 정식 독립설치에 대한 의견

● 보육사업(14회)

- 공1(6)-유아교육계 직원중 유아교육전공자가 있는가. 교육청 유아교육계와 명칭 동일

-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과 교육이 분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비교육기관인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가
-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저소득층 90만원이하 소득자보다 중산층이용자 많은 점
- 구립보육시설의 저소득층이용율이 23%인데 민간시설과의 차이점은
- 1981년 조례통과후 90년도에도 영리법인에 준 적이 있는데 왜 현장감독을 안하는가

공2(2)-조례와는 별도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한 것이 아닌가

- 직영화도 정책화하려면 조례개정부터 추진했어야

공4(6)-보육시설 시직영화 발표이후 반발에 의해 번복후 취한 조치

- 어린이집 위탁시 개인에게 준 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영리병원도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 종교시설, 학교시설확충계획에서 52개뿐인데 남는 예산관계, 종교시설 3년위탁 후 계획
- 보육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 제시
- 보육에 관한 낙후된 법조항이 많음에도 9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는 이유
- 감사원조사가 2번 나온 이유는

●요보호여성(4회)

공4(4)-일시보호소인 부녀보호소의 장기진료 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책

- 정신병원, 보호소이외의 중간단계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복지시설의 필요
- 소송내역 (답)94. 7. 1 폐쇄된 시립여자기술원에 수용보호된 윤락여성 인권문제 분쟁
- 모자가정에 대한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가.

●사회참여 확대(2회)

공1(2)-조례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발전기금10억조성 이유

- 21개 여성단체에 지원한 예산액

●기타(2회)

공1(1)-감사자료부실문제:1)똑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자료제출

- 2)위탁법인 자료중 이사회회의록, 위탁운영계획서, 정관 등이 일괄 미포함.

공4(1)-감사자료 부실문제:개인 보육시설 현황은 80%이상 틀림

● 본회의

사회복지(7회)

사회복지관 건설, 운영시 국비지원폐지에 대한 대책/96년도 사회복지예산 인상을, 총 예산에서의 비율/복지예산증액에 관한 대안/학교내 보육시설설치 무희망에 대한 대책/보육시설 문제점에 대한 대책/세추위 보육사업 계획예산의 활용처/자치구 실정에 맞는 복지조례 제정

기타(2회)

유명무실한 위원회대책/에이즈오염대책

급식(5회)

학부모부담에 대한 대책/96급식예정학교 후원금 부진 대안/학교급식품 구입단가상승 해결책/급식의 질(신선도, 위생, 영양기준)대책/조리종사원(4명->5,6명)및 인건비 현실화(₩15,200->₩30,000)

학교내 성차별(3회)

초등교사의 남녀비율 불균등/교과서 성차별 그림/성희롱교사 징계 지연이유

문화위원회

학교내 성차별(6회)

공1(6)-여학생교육원 설치(2명)/-교과서, 교육프로/ -강동구 여고 신설계획
-인문계 미진학여고생에 대한 취업교육계획/ -성희롱사건 교사 최종조치

사회교육(1회)

기타-주부교실 운영기관

자녀지도(7회)

공1(6)-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선임기준, 부정여부/ -중고폭력서클 대책
-학생 약 오·남용 예방/ -여중1, 2학년 일제담배 흡연문제
-징계학생의 가정환경조사/ -달동네 부부취업으로 인한 아동방치
공3(1)-방과후 아동대책

급식문제(12회)

부정(6):공1(3)-감독소홀에 의한 공무원 징계 여부/-부정재발 방지대책
-부정인사 공개
공2(3)-부식납품과 관련된 부정방지대책
-주방시설액의 10-15% 금품요구 대책
-감독청 소홀로 공사부실 대책
운영(6):공1(3)-중고급식 예산지원/ -변두리 국민학교 급식시설은 학부모 부담없게
-공동실습소 운영고교 급식시설 설치
공2(2)-후원비 저축 이자 관리 지도책/ -급식시설 계약체결 모순점
기타-조리기구 조달청구매요청 현황

학부모단체 관리(1회)

기타-기능, 회비징수와 사용내역, 결성취지대로 운영되는 지에 대한 조사

● 행정사무조사

환경(16회)

공1(8)-학교 건립시 졸속 공사/도시가스정압기 이전 촉구(2)/교실부족대책마련(2)
2부제수업 해소 위한 증축(2)/ 교육여건 부족에 대한 대처
공2(2)-안정성에 대한 대책/교실 누수 발생 방지 졸속 공사
기타(6)-운동장의 도시가스정압기의 설치여부를 학부모가 아는지
220볼트 시설설치 대책/교통사고 대책/도시가스정압기 설치시 자료
2부제 해소 노력 여부/지역개발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급식문제(55회)

운영(29):공1(11)-결식아동수 파악과 지원대책/급식 전학년 실시
저소득 지역의 우선 지원/1,2학년 급식 실시(2)
학부모부담 없는 개선방안/급식확대 노력/교육청에 예산확보 노력
급식위원회 권한 강화/승인문제/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공3(1)- 각 자치구내 방앗간에서 떡납품 권장토록:교통문제, 기름값절약,
지역상인 도움
기타(17)-급식시설 기구 입보 조치에 대해/급식시설 안전진단 여부
결식아동문제/저소득지역 지원문제/시설노후로 급식 중단한 적이
있는지/예산확보 공문 정식요청 여부/보수방법/우유로 인한 식중독
발생 여부/급식후원회 구성여부/급식위원회의 부식납품업체 결정여
부/급식위원회 활동에 대해/구로 버들식품 선정이유/급식학교장 모
임 자료/급식설문조사 자료/유사납품업체 숫자/서부공급학교 업체명
대영 캐더링(가공식품업체)에 대한 현황

부정(9):공1(3)-납품업체 선정시 비리없도록

-버들식품(떡, 면류 업체)의 급식학교 50% 공급중: 로비작업의 여부
-납품 로비활동과 비리 추정

기타(6)-버들식품의 연간 수익금/수익금의 수치가 틀림

교육청관계자와의 친분 여부/수금방법
해인, 대영(가공식품 업체)에서 납품하는 물품의 가격에 대한 정밀조
사 건의 독점이유

급식의 질(17):공1(9)-쌀의 질에 대한 감독 철저히(2)/영양문제(2)/조미료, 흰설탕, 흰소금, 세제, 화학간장 사용 자제(2)/결식아동에게 우유공급 인스턴트, 화학식품 사용하지 말도록/질 나쁜 쌀과 수입밀가루 사용으로 폭리취함

공3(1)-값을 올릴지라도 양질의 쌀 사용 권장

기타(7)-쌀의 질 상태/식품분석 여부/쌀구입가격/떡성분,

조미료사용 여부(2)/ 면의 성분/고추가루 생산지와 질

자녀지도(5회)

기타(5)-지진아 지도 여부 및 방법/방과후 아동지도/교재부족과 해결방법

맞벌이부부를 위한 유치원 병설 권유/남녀 반배정 방법 및 생활지도 방법

학부모단체 관리(4회)

공1-학교운영위 활동 지원

기타-육성회, 어머니교실 활동사항/학부모 찬조금 실적

학부모에게 학교방문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2. 서울시의원 명단 ('95. 9 현재)

☆의장:문일권 ☆ 부의장:김기영,이성구

구분	운영위	내무위	재무 경제위	생활 환경위	보건 사회위	수자원 관리위	문화 교육위	건설위	도시 정비위	교통위
정수	16(2)	17	16(2)	16(1)	16(4)	16(1)	16(4)	16	17(1)	16(1)
위원장	김수복	오세근	문석진	김영강	조재환	민상금	안순덕	김석판	김석호	이창근
국민회의	간사 위원 김홍규 김종래 양경숙 오광렬 우원식 정진우 정태종 정한식 최형신 황인명	김재경 김명곤 김영준 김재인 김종구 김종래 여정구 정병팔 정해순	정수화 곽순영 김광순 김신호 김홍규 백남선 양경숙 이정의 황인명	민영삼 김기영 김수복 오광렬 우원식 이금라 이성호 전병만 정진우 정태종 최영운 황정식	정진택 박덕기 박시하 박찬수 유준상 이달원 홍승채 최종오 최준화 최창규 최형신	황호순 고용진 김명현 나태균 노태숙 송덕화 신경식 유종필 이강욱 정복진	정한식 김형근 서재완 양동기 유대운 이선재 이영순 이재진 임종화 허광대	민연식 김성수 노영석 민경엽 백성덕 양희선 윤복영 이재원 장하운 정재천 지용호	김낙순 구철희 김장주 김주철 박상근 박수환 유덕렬 이강진 이용부 조순형	김희갑 김영춘 김형길 박계수 이시영 이윤중 정병인 조상남 홍성룡 황병오
민주당	위원 송인회 홍락원	고광철 성성용 이건행 차성환 최광웅	김상남 김승건 노재동 박남식	박일남	문팔괴 정선순	송인회 지창수 최종덕	김을동 어운경 임정지 조상훈	홍락원	김병임 박찬국 송중섭 홍진구	김성춘 이지문
신한국당	간사 위원 김성호 김영희 홍순철	김동수 경규복	이양한 김승자	안병소 김성호	문용자 홍필표	유기종 김천주	손복	장정일 홍순철	백의종 이두하	김영희 이성구
무소속										이영춘
소관	의회운영 사무처 특위구성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 국 소방본 부 지방경 찰청(예 산지원 연관)	기획 관리실 재무국 농수산 물도매 시장관 리공사	산업 경제국 청소사 업본부	보사 환경국 가정 복지국 강남병원	상수도 사업본 부 하수국	공보관 문화 관광국 교육위 원회(의 회의결 要) 시립대 공무원 교육원	도로국 종합건 설본부 도시시 설안전 관리본 부 건설관 리공단	도시 계획국 주택국 도시개 발 공사	교통국 지하철 건설본부 지하철 공사 도시 철도공사 교통 방송본부

* 고딕체는 여성의원, ()는 여성의원 수
 * 96년도에 교체된 의원:비례에서는 조재환 ⇒ 장수원(보사), 지역에서는 김을동 ⇒ 윤종일(수자원)
 송중섭 ⇒ 정지홍(문교), 이영춘 ⇒ 이기연(교통). 보사위원장은 조재환 ⇒ 최형신

● 여성특위(12)

위원장:이영순

간 사:이금라

김을동, 양경숙, 임정지, 정선순, 문팔패, 이지문, 이윤중, 전병만, 김성호, 김영희

● 예결특위(27)

위원장:정진우

간사:고용진, 김성춘, 안병소

김광순, 김명곤, 김성수, 김종구, 김종래, 박성덕, 박시하, 이강욱, 이강진, 이달원, 이성호, 이시영, 이용부, 이윤중, 유기중, 유준상, 양경숙, 임종화, 황병오, 홍승채, 박남식, 지창수, 이두학

3. 각종 위원회 개요

□ 법령위원회 (39종)

*** ()는 여성위원수, '96. 4. 4 현재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			기능	주관부서	
		계	공무원	외부인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획관리실장	213(4)	3	210(4)	심의	기술심사 담당관	
지명위원회	부시장	10(1)	2	8(1)	심의의결	자치행정 과	
AIDS보호심사위	보건사회국장	8	5	3	심의	의약과	
의료심사조정위	부시장	13(2)	2	11(2)	"	"	
마약류치료보호심사위	시립정신병원장	6(1)	1	5(1)	"	"	
의료보호심의위	보건사회국장	5	3	2	"	사회과	
사회복지심의위	부시장	25(7)	3(1)	22(6)	"	"	
지방고용심의회	시장	12(4)	3	9(4)	심의조정	노동과	
재정계획심의위	부시장	14	8	6	자문	예산2 담당관	
보육위	주정일(아동상담소장)	17(11)	2(1)	15(10)	"	가정 복지과	
윤락여성선도대책위	가정복지국장	11(7)	4(1)	7(6)	"	여성 복지과	
지방청소년위	시장	14(2)	2(1)	12(1)	"	청소년과	
아동복지위	김수남(소년한국사장)	17(6)	3(1)	14(5)	"	"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	시장	16	9	7	심의	도로 관리과	
광고물관리심의위	부시장	8	2	6	"	도시 경관과	
도시계획위	"	22	4	18	"	도시 계획과	
토지이용심사위	"	7	3	4	"	지적과	
지방지적위	재무국장	7	4	3	심의의결	"	
건축 위원회	건축위	주택국장	30(1)	3	27(1)	심의	건축 지도과
	도시경관소위	"	17	2	15	"	도시 경관과
	도시설계소위	"	9	2	7	"	"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			기능	주관부서
		계	공무원	외부인사		
재개발사업가격평가위	도시계획국장	10	1	9	심의의결	재개발과
도시교통	심의위원회	38(1)	30(1)	8	심의	교통기획과
정책심의위	조정위원회	17	9	8	사전심의	"
교통영향심의위	교통관리실장	14	6	8	심의	"
교통안전대	대책위원회	15	9	6	심의의결	"
책위	실무위원회	17	10	7	사전심의	"
유통근대화추진위	부시장	*구성 보류			심의	(구성보류) 소비자보호과
도,소매업진흥심의위	"	14	5	9	"	"
소비자정책심의위	"	10(3)	7	3(3)	"	"
지방환경보전자문위	"	10	2	8	자문	환경계획과
지방하천관리위	"	12	1	11	심의의결	치수과
관광속박업등록심의위	"	8	6	2	심의	관광진흥과
교통방송시청자위	손용(중앙대)	14(2)	1	13(2)	심의	교통방송본부
문화예술진흥위	시장	13(1)	3	10(1)	"	문화과
수돗물진단위	권숙표	10(4)		10(4)	심의의결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권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시장 (기획관리실장)	5 5	5 5		심의조정	심사분석담당 관
도시안전	대책위	27(1)	14	13(1)	심의	재난관리과
대책위	실무위	40(2)	27	13(2)	사전심의	"
외국인투자심의위	지역경제국장	8	5	3	심의	경제진흥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	부시장	15(1)	7	8(1)	심의의결	자치행정과
민자유치사업심의위	부시장	15	7	8	심의	예산2담당관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상해보상심의회	정무부시장	5	3	2	"	기획담당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협의회	최의소(고대교수)	60(8)	2	58(8)	"	폐기물관리과
소 계		863(69)	235(6)	628(63)		

□ 조례위원회 (20종)

위원회명	위원장	기능	구성			주관부서
			계	공무원	외부인사	
투자기관경영평가위	부시장	심의의결	13	9	4	예산2담당관
서울시민대상운영위	김영상(향토사회회장)	"	12(3)	1	11(3)	자치행정과
자랑스러운시민상 및 공무원상공적심사위	윤주홍(의사)	"	15(5)	3	12(5)	"
민원심의위	부시장	심의	33(5)	2	31(5)	민원담당관
지방세심의위	기획관리실장	"	17	6	11	세무행정과
물가대책위	부시장	"	13(2)	6	7(2)	소비자보호과
지역경제협의회	"	"	29(2)	16	13(2)	경제진흥과
문화재위원회	"	"	31(2)	1	30(2)	문화재과
도시공원위원회	"	"	13	4	9	공원과
지하철건설 기술자문위		"	160		160	지하철건설본부
노인복지기금운용위	부시장	"	14(3)	5(1)	9(2)	가정복지과
명예시민증심사위	"	"	7(2)	4	3(2)	국제교류과
한강보전자문위	권숙표(연대명예교수)	자문	33(3)		33(3)	한강관리사업소 (총무과)
서울세계화추진 협의회	부시장	심의	16(1)	4	12(1)	국제교류과
시사편찬위	손정목	"	18(1)		18(1)	문화과
서울600년사업자문위 (6개분과)	임동권(중대교수)외5명	자문	85(4)	7	78(4)	"
시립대학교운영위	시장	심의	15(2)	7	8(2)	시정개발담당관
지하수관리위	하수국장	"	11	1	10	치수과
감사자문위	안경상(변호사)	"	9	3	6	감사담당관
상수도자문협의회	정규영(신우엔지니어 링)	자문	15		15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소 계			559(35)	79(1)	480(34)	

□ 훈령,규칙위원회 (5종)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			기능	주관부서
		계	공무원	외부인사		
통계조정협의회	기획관리실장	14	12	2	심의	전산정보담당관
방위협의회 (실무협의회)	시장 (부시장)	27(1) 33(1)	18 26	9(1) 7(1)	심의의결	총무과
계약심사위	부시장	12	6	6	심의	회계과
버스노선조정심의회	"	19	4	15	심의의결	대중교통1과
자동차운송사업 육성자금심사위	"	5	4	1	심의	"
소 계		110(2)	70	40(2)		

□ 기타방침위원회 (14종)

위원회명	위원장	구 성			기능	주관부서
		계	공무원	외부인사		
홍보물제작심의위	공보관	11(2)	5	6(2)	심의	공보담당관
도로자문협의회	도로국장	20	2	18	자문	도로계획과
공동주택분양가심의회	기획관리실장	7	1	6	심의의결	주택기획과
진폐증심의위	윤임중 (성모병원진료부장)	8		8	심의	연료과
생활개혁추진협의회	내무국장	24(8)	3	21(8)	자문	사회진흥과
교통처리개선위	(代)교통운영과장	13	6	7	자문	교통운영과
신청사전립시민위	이광노(서울대명예교수)	46(3)		46(3)	"	총무과
위해식품감시 시민단체협의회	보건사회국장	13(9)	3	10(9)	"	보건위생과
안전관리자문위	윤석길 (건설진흥공공단대표)	35	1	34	"	건설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실)
녹색서울시민위	박영숙 (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100(20)		100(20)	"	환경계획과
바른시정시민위	고병익(전 서울대총장)	50(7)		50(7)	"	시정개발담당관
여성위원회	행정1부시장	29(23)	3(2)	26(21)	"	여성복지과
CI개발자문위	민철홍(서울대교수)	23(4)	4	19(4)	심의	홍보담당관
서울관광진흥협의회	문화국장	12	2	10	자문	관광진흥과
소계		391(76)	30(2)	361(74)		

● 설치근거별 현황

총 78종 = 법령 : 39, 조례 : 20, 훈령·규칙 : 5, 방침 : 14

*공직자윤리위, 소청심사위, 행정심판위, 지방토지수용위, 환경분쟁조정위 등 행정위원회 및 내부위원회 제외

● 위원구성 현황

계	공무원	외부인사	비고
1,923명 (182)	414 (9)	1,509 (173)	* ()여성위원수 전체위원의 9.5%

● 국별 위원회 현황

계	감사실	공보관	기획관리실	내무국	재무국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지역경제국	문화국	환경관리실	도시계획국	주택국	도로국	교통관리실	하수국	민방위국	본부사업소
78종	2	2	9	7	2	6	6	8	8	4	4	3	2	6	2	1	6

● 위원장 현황

위원장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국장사업소장	외부인사
78명	10	28	4	17	19

4. 여성관련시설 현황

복지관3/수용보호2/모자원7/직업보도5(선도보호3,미혼모2)/상담소14/성피해상담소3/성피해일시보호

● 복지관 3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대지/건물)	예산('96)	인원
구로부녀복지관	금천구 시흥4동 산 139-2	4,578/1,794	18억25만6천	52명
마포 "	마포구 용강동 70-2	631/1,187	12억6,127만5천	37
노원 "	노원구 중계동 501-1	1,500/1,240	12억2,268만3천	31

● 수용보호 2

시설명(기능)	소재지	시설규모	예산('96)	인원
시립부녀보호소(부랑부녀자, 윤락여성 일시보호)	동작구 대방동 345-1	2,400m ² /1,594m ²	9억3,007만8천	26
시립영보자애원(재단법인 천주교 성모영보 수녀회 유지재단)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묵리464	29,033m ² /건물 11동8,913.84m ²	운영비;22억1,416만 보강비10억9,755만7천	71명 (수용인원; 천명)

● 모자보호시설현황 7

시설명	소재지	'95예산 (백만원)	설치 년월일	수용세대 (정원)	시설규모(평)			전화
					대지	건물/ 숙소	1세대당 면적	
성심모자원	용산.도원동3-6	68	54.10.1	19(20)	122	272/215	10.7	712-5287
해방	용산2가1-1485	159	53.3.10	23(24)	559	340/220	9.1	754-5702
영락	성북.정릉동719	170	51.1.10	29(32)	1,123	625(355)	10.7	914-1940
동광	노원.중계동426-5	76	53.3.15	24(24)	326	370(180)	7.5	930-5782
수궁	구로.궁동93	69	54.10.1	9(21)	500	241(185)	8.8	612-6736
창신	구로.오류동156-31	95	54.9.1	21(23)	165	354(249)	10.8	612-7142
평화	구로.고척동60-25	86	53.9.20	18(20)	500	400(171)	8.52	614-4303

● 직업보도소 5

시설명	운영주체	소재지	예산('95) 백만원	수용현황 현원(정원)	시설규모 대지/건물	전화번호
미혼모	구세군 여자관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145	23(35)	2,321/811	363-5722
	애란원	대한예장총회 자선사업재단	184	34(40)	548/952	393-4725
선도보호	은성직업기 술원	은성원 (사회복지법인)	165	16(35)	308/426	843-3872
	자매복지 회관	은강회 (")	125	53(70)	3,193/ 2,472	665-9237
	한국여성 의 집	사랑의 세계 (")	142	30(30)	331/321	333-7511

*선도보호 : 윤락행위자, 윤락우려여성, 상습가출여성

● 상담소 현황 14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역여성복지상담소	중구 서울역광장	753-4558
용산구 "	구민회관내	793-8550
광진구 "	광진구청 별관 3층	455-8095
청량리역 "	동대문 청량리역 광장	966-1762
성북구 "	하월곡동	929-6369
도봉구 "	구민회관내	901-5545
서대문구 "	문화체육회관내	330-1552
양천구 "	신정복지관내	642-6964
강서구 "	강서종합복지관내	602-5232
금천구 "	금천공단복지관내	856-2950
영등포역 "	영등포역사내	678-6726
서초구 "	서울고속터미널광장	533-8433
서초구민회관종합상담소	구민회관내	575-0900
강동구여성복지상담소	천호동	471-8005

● 성폭력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개설일자	시설규모(m ²)	운영법인	전화번호
열림터		95.1.23	149.57	한국성폭력 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초.양재동106 경원 BD4층	94.11.17	120.56	"	576-7127~8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중구 장충동1가 38-84	95.10.16	108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2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	양천구 신정동 1052-25	95.10.31	30.2	한국여성 민우회	643-3606

●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현황

구 별	장 소	운 영 내 용	전화번호
서울시알뜰주부 재활용품상설전시관	지하철2호선 을지로입구역내	환경관련판넬, 리필제품, 환경마크상품, 분리수거, 용기전시, 재생용품교환	755-8144
동대문구재활용센터	장안동106-1	환경, 재활용관련판넬 전시/재생용품교환	920-4579
중랑구 "	면목3동843-7	중고생활용품 교환, 매매/ "	433-8972
성북구 "	안암5가140-37	" /농산물직판코너	925-1421
도봉구상설알뜰매장	창1동663-7	" /재생용품교환, 판매	990-6775
도봉구재활용센터	쌍문2동713-44	재생용품 교환, 판매	902-8272
도봉구재생활용품 상설매장	"	중고생활용품 교환, 매매	993-8944
노원구재활용센터	하계1동170	" /재생용품 교환, 판매	974-7282
서대문구재활용품 전시관매장	홍은동426-8	중고의류, 도서, 완구교환/ "	394-8272
마포구재활용센터	망원동460-5	환경관련홍보물 전시/ "	337-5606
강서구 "	가양2동사무소지하	" / "	3663-2085
서초구 "	양재동212	중고생활용품 교환, 판매/ "	571-7272
강남구 "	삼성동161-3	중고생활용품 판매/ "	501-7157
송파구 고쳐쓰기센터	문정1동2-5 시영A앞	재활용품 교환, 판매 각종물품수리센터 운영	430-2160
송파구재활용안내소	신천동29	폐건전지수거/중고생활용품 교환, 판매	202-3118
강동구중고물품 교환시장	상일동147	중고생활용품 교환, 매매 재생용품교환, 매매	426-7282

● 자치구별 상설 교환시장 현황

구 별	위 치	면 적	운 영 주 체	운 영 내 용
중랑구	면목동843-7	30평	새마을 부녀회	재활용품 교환, 판매, 수리전시
성북구	안암동140-4	35평	"	중고물품 교환, 판매
도봉구	창1동553-37	25평	주부환경봉사단	재활용품교환, 판매, 전시
노원구	하계동170-14	103	자치구	" 전시수리
서대문	홍은동428-1	60	"	"
강서구	가양2동사무소지하	30	"	전시
강남구	삼성동161-3	80	재활용추진협의회	" 수리전시
송파구	문정동2-5	136	새마을부녀회	" "
강동구	상일동147	102	자치구	" "

● 서울시 여성 자원활동센터(29개소) 현황

센 타 명	장 소	주 소	전화번호
시 센터	서울시청 여성복지과	중구 태평로1가 31	731-6487
남부지역센터	구로부녀복지관	금천구 시흥4동 산 139-2	802-0138
중부	마포 "	마포구 용강동 70-2	719-9867
북부	노원 "	노원구 중계동 501-1	974-6790
종로구	종로구청 가정복지과	종로구 수송동 146-1	731-0491
중 구	중구청 "	중구 예관동 120-1	260-1491
용산구	용산구청 "	용산구 원효로1가 25	710-3491
성동구	성동구청 "	성동구 마장동	290-7461
광진구	광진구청 "	광진구 자양1동 220-147	450-1491
동대문구	청량리 부녀상담소	동대문구 청량리동 588	966-1762
중랑구	중랑구청 가정복지과	중랑구 면목7동 777-1	490-3491
성북구	성북구청 "	성북구 삼선5가 411	920-3490
강북구	강북구청 "	강북구 수유동 192-59	901-6490
도봉구	도봉구민회관	도봉구 창5동 30	901-5687
노원구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노원구 상계6동 701-1	950-3490
은평구	은평구청 "	은평구 녹번동 84	350-1491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	서대문구 연희3동 168-6	330-1491
마포구	마포구청 "	마포구 성산동 275-3	330-2491
양천구	신정복지관	양천구 신정7동 330-13	642-6964
강서구	강서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본동 140-35	602-5232
구로구	구로구청 가정복지과	구로구 구로동 435	860-2444
금천구	금천구 부녀상담소	금천구 가산동 345-58	856-2950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녀상담소	영등포구 영등포1가 618	678-6726
동작구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동작구 노량진동 47-2	820-1491
관악구	관악구청 "	관악구 봉천4동 1370-1	880-3492
서초구	서초구청 "	서초구 서초2동 1376-3	570-6490
강남구	강남구청 "	강남구 삼성동 8	510-1492
송파구	송파구청 "	송파구 송파동 540	480-1491
강동구	강동구청 "	강동구 성내동 540	480-1491

기 타

- 가정상담소-동대문구 장안2동

-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패션디자인 등 12공과)-용산구 한남동

5. 여성관련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조례(1993·5·11)
- 서울특별시립 장묘시설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993·1·13)
- " 조례시행규칙(1993·5·15)
-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1981·9·8)
- 서울특별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규칙(1989·11·14/1995·11·30 제1차개정)
- 서울특별시립 부녀보호소설치조례(1991·7·6/1995·1·16 제1차개정)
- " 조례시행규칙(1974·11·20)
- 서울특별시 사설모자보호시설 운영규정(1993·5·6)
- 서울특별시 근로청소년회관 운영규칙(1982·5·27/1993·7·26 제5차개정)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1984·2·23/1996·1·15 제16차개정)
- 서울특별시립 아동상담소 설치조례(1991·7·6)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사업관 설치조례(1991·7·6)
-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설치조례(1991·7·6)
- " 직제규칙(1994·4·14)
- 서울특별시립 근로자후생시설 설치조례(1991·7·6/1995·1·16 제2차개정)
- " 직제규칙(1991·7·6)
- " 설치조례시행규칙
(1978·6·8/1995·2·10 제7차개정)
- " 사용료징수 조례
(1991·6·27/1995·1·16제4차개정)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1996·5·20)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운영위탁과 비용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탁)

①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용정원 및 입퇴소)

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아동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대여재산을 어린이집의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7조(감독)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에게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 시행이전에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명령,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립 부녀보호소 설치 조례

제1조(설치)

제3조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보호여성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립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치)

보호소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업무)

보호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윤락행위 상습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의 일시보호
2. 부랑부녀자의 일시보호

제4조(소장)

- ① 보호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②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보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립 부녀보호소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설치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용대상)

①서울특별시립부녀보호지도소(이하 "보호지도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우여성으로서 보호지도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상파악결과 수용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용한다.

1. 경찰 기타 관계기관이 보호의뢰하는 불우여성
2. 수용보호 또는 기술습득을 위하여 입소를 자진 희망하는 요보호여성
3. 무의무탁한 부랑부녀
4. 기타 윤락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를 요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전항의 신상파악은 상담에 의한다.

제3조(입소절차)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보호가 결정된자는 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질병의 진료)

- ①소장은 보호지도소 입소자에 대하여는 전원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전항의 검진결과 법정전염병의 보유자는 격리치료하고 성병 기타 전염성이 약한 질병 및 경미한 질병보유자에 대하여는 보호지도소내에 설치된 치료소에서 치료하되 증상에 따라 시립병원 또는 다른 치료기관의 치료를 받게 한다.

제5조(퇴소)

소장은 재소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소하게 한다.

1. 친권자가 인계를 요구하는 자
2. 자립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자
3. 불구, 중질병, 정신이상 및 임신 3개월 이상자로서 소내 생활이 곤란한 자중에서 적절시설에 이송을 요하는 자
4. 결혼 또는 취업하게 된 자
5. 기타 수용보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다만, 성병치료중에 퇴소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일반교육)

소장은 재소자에게 생활지도외에 문자교육과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위생 기타 일반교양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기술교육)

①전조의 일반교육 이외의 재소자의 자활능력 개발을 위하여 재소자의 소질 및 희망에 따라 다음의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1. 이용 2. 미용 3. 양재 4. 편물
5. 수예 및 조화 6. 가사보조원 7. 기타 노동수급이 용이한 직종

②기술교육의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소정 시험의 실시결과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직업을 알선한다.

제8조(취업알선)

소장은 재소자중 자격취득 기타 자활능력이 갖추어진 자에 대하여는 직업을 알선한다.

제9조(일용품지급)

재소자의 생활용품 및 교육용품은 일체 보호지도소에서 지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규칙) 197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규칙 제1238호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 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시설모자보호시설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자복지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모자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소대상)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모자복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모자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을 입소하게 하며, 입소대상자가 많을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다만, 시설 입소사실이 있었거나, 서울시 거주기간이 1년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제3조(입소절차)

①시설관할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입소대상자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자를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소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함으로써 이에 갈음을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부
2. 호적등본 2부
3. 무주택입증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증 택일)
4. 사진3매
5. 거주지 약도
6. 요구호자 증명(입소정원 초과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입소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부녀상담원의 복명서를 첨부하여 시설관할구청장에게 입소의뢰하되, 입소 가능한 시설부터 우선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입소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자신상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입소 즉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입소자 신상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입소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소의 취소)

①시설관할구청장은 입소결정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적당한 사유없이 입소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취소된 자가 재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입소절차에

의한다.

제5조(입소자의 의무 등)

①입소자는 시설관할구청장 또는 시설의 장이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소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질서를 지켜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기간)

①입소자의 보호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갑작스런 재해로 인하여 자립이 불가능하게 된자
2. 자립기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4분의 3이상 이미 불입하고, 보호기간 내에 불입을 완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시설에서의 생활이 모범적이고 자립의욕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퇴소에정일 30일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의 장 의견서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연장사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퇴소조치)

①시설관할구청장은 입소중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요청에 의해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2. 입소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입소 보호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한 자
4. 공동생활이나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5. 집단소란, 풍기문란 및 시설의 파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기타 시설의 운영과 지도, 감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시설관할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소를 명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퇴소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소한 자가 시설에 재입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소기간은 종전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

제8조(퇴소절차)

- ①시설에서 퇴소하고자 하는 자는 퇴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퇴소 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퇴소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입소된 자로 본다. 이 경우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해 최초로 입소한 날부터 기산한다.

서울특별시 근로자 후생시설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일반부녀자에 대한 기술교도 및 직업안정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장 소속하에 근로자 후생시설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운영구분)

- ①근로자 후생시설의 명칭 및 운영주체는 별표와 같다.
- ②근로자 후생시설의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제3조(업무)

근로자 후생시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근로자 후생시설의 운영 및 근로자 복지증진
- 2.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의 기능교육 및 교양
- 3.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의 무료직업 알선

제4조(관장)

직영시설에 관장 1인을 두되, 구로부녀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마포·노원부녀복지관장 및 남부·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이용자격 및 기간)

근로자 후생시설 이용자격과 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료)

후생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경영 제한)

수탁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제한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1. 본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 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공무원)

직영시설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회관장이 행한 행정처분*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근로자회관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근로자 후생시설 명칭

(개정 95. 1. 16)

시 직 영	위 탁 경 영
서울특별시 구로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남부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마포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립 공단근로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부녀복지관	서울특별시립 근로자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동부근로청소년회관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2. 여성지도자 및 여성의 교육·국내외 연수
3.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행사
4.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및 발생예방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년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장과 여성정책보좌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2.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④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고 간사는 서울특별시 여성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여성복지과 여성행정계장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